

#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·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2
----------	--------

2023. 4. 13.  
도시교통위원회

## 1. 수정이유

본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 지원·관리에 관한 조례이나, 우리 시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없으므로 시행시기를 현재 진행중인 재생사업이 완료 예정 이후로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부칙 중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를 “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”로 수정함.

## 남양주시 조례 제 호

###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·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·관리 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·구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부 칙	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